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해사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

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자가 안전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인·허가 처분기관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, 인·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해사안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18063호, 2021. 4. 13 일부개정, 2021. 10. 14. 시행)됨에 따라,

전문기관 지정과 인·허가 처분기관의 이행여부의 확인결과 제출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(안 제7조의4)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·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

법인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.

나. 해상교통안전진단 사후관리절차 등 규정(안 제7조의5, 제8조의2, 별표2의4)

안전진단 검토의견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·허가 처분기관이 별표2의4에 따라 해당 사업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(3개월 이내)하도록 함.

다.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운영기준 등 규정(안 제14조의2)

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리체계를 통해 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4(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) 법 제15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2. 법 제15조에 다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·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기관

제7조의5(사후관리)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확인결과의 제출시기는 별표 2의4와 같다.
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의2제4항 전단 중 “법 제18조의2제8항”을 “법 제18조의2제9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

다.

⑤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의 이행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5를 준용한다. 이 경우 확인결과는 이행결과로 본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등)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구축된 해양교통안전정보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 등을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.

제20조의2제1항 중 “법 제97조의3”을 “법 제97조의4”로 한다.

제21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면허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요청
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4부터 제14조의2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의4]

확인내용 및 확인결과 제출시기(제7조의5제1항 관련)

안전진단대상사업 구분	확인내용	확인결과 제출시기
가.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·고시 또는 변경	항로 또는 정박지 지정·고시·변경 중 안전대책	항로 또는 정박지 지정·고시·변경 개시 후 3개월 이내
	항로 또는 정박지 지정·고시·변경 후 안전대책	항로 또는 정박지 지정·고시·변경 완료 후 3개월 이내
나.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	채굴·골재채취 중 안전대책	채굴·골재채취 개시 후 3개월 이내
다.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·터널·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·부설 또는 보수	교량 또는 터널 건설·부설·보수 중 안전대책	교량 또는 터널 건설·부설·보수 개시 후 3개월 이내
	교량 또는 터널 건설·부설·보수 후 안전대책	교량 또는 터널 건설·부설·보수 완료 후 3개월 이내
라.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·재개발	항만 또는 부두 개발·재개발 중 안전대책	항만 또는 부두 개발·재개발 개시 후 3개월 이내
	항만 또는 부두 개발·재개발 후 안전대책	항만 또는 부두 개발·재개발 완료 후 3개월 이내
마. 그 밖의 사업	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의 선박 투입 전 안전대책	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의 선박 투입 전 3개월 이내
	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의 선박 투입 후 안전대책	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의 선박 투입 후 3개월 이내
※ 비고 1.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 등으로 안전대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및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. 2. 위 표에 따른 안전대책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포함한다.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4(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 기관의 지정) 법 제15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”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</u> <u>1.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</u> <u>2. 법 제15조에 다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·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기관</u>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5(사후관리)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확인결과의 제출시기는 별표 2의4와 같다.</u> <u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</u>

제8조의2(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
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)

① ~ ③ (생략)

④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, 그 결과를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견서의 서류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관 등의 장의 안전진단서, 이의신청서,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8조의2(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
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18조의2제9항

⑤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
국가기관 등의 장의 이행결과의
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5를
준용한다. 이 경우 확인결과는
이행결과로 본다.

⑥ 제5항

제14조의2(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 체계 구축 등) ① 해양수산부장

제20조의2(해양안전의 날 등) ① <u>법 제97조의3</u>에 따른 해양안전 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. ② (생략) 제21조(권한의 위임) ① ~ ④ (생 략)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9조제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. 1. ~ 4. (생략) 5. 삭제 <u><신설></u> ⑥ (생략)	<u>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 계에 구축된 해양교통안전정보 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.</u> ② <u>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 안전정보 등을 해양교통안전정 보관리체계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.</u> 제20조의2(해양안전의 날 등) ① <u>법 제97조의4</u>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1조(권한의 위임) ① ~ ④ (현 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6. <u>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면 허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요청</u> ⑥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820